

의안번호	2215533
의 퇴 인	송재봉 의원
회 답 일	2026. 2. 24.
추계번호	25A7215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조사)	○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제1항) ○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4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권고할 수 있음(제3항)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위반행위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2	안 제29조(피해 입증 지원)	○ 정부는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기술 침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제1항) － 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을 통한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 산정 업무 지원사업 － 2. 중소기업이 보유한 디지털기기에 남아 있는 증거 확보·복원·분석 등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	재량규정
3	안 제30조(피해회복 지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전담기관에 관련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31조(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 특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술보호 기반조성과 신속한 피해회복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 감면 등 지원기준을 완화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34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	○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중재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제1항)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함(제	의무규정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2항) - 1. 분쟁의 알선·조정·중재에 관한 사항 - 2.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는 분쟁의 조정 - 3. 조정부 및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 4. 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제3항)	
6	안 제36조(알선)	○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음(제1항) ○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이 제34조제10항의 전문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함(제2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11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조사)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29조(피해 입증 지원)	
3	안 제30조(피해회복 지원)	
4	안 제31조(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 특례)	
5	안 제34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설치)	
6	안 제36조(알선)	

2. 상해 사유

가. 위반행위의 신고 및 조사(안 제11조)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이 안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해 조사를 하고,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권고하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등의 금지”(안 제9조)와 “기술제공요구에 대한 서면발급 등”(안 제10조)을 규정하고, 동 조를 위반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도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등에 대해 중소기업자 등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나,¹⁾ 개정안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²⁾ 신고 사항에 “기술제공요구에 대한 서면발급 등”(안 제10조)의 위반행위를 추가하고 있음

○ 또한, 개정안은 안 제9조 및 제10조의 위반과 관련하여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동 위원회의 회의 운영비용이 증가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의 확대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안 제9조·제10조 위반 건수 등을 현시점에서 추정하기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신고 및 조사) ①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당한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등”이라 한다)는 그 사실을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중소기업자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개정안은 다음의 행위를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포함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 취득한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을 부당하게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마. 계약관계 등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그 기술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나. 피해 입증 지원(안 제29조) 및 피해회복 지원(안 제30조)

- 정부가 기술 침해가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 입증을 지원하고(안 제29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피해회복을 지원하면(안 제30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기술탈취근절”, “기술보호선도기업육성 및 피해회복지원” 사업을 통해 피해 입증 지원 및 피해회복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데, 개정안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향후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다만, 개정안에 따라 확대된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지원 대상자 수 등을 현시점에서 추정하기 어려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참고로, 안 제29조의 피해 입증 지원과 관련하여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지털포렌식 지원, 손해액 산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표 1]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관련 피해 입증 지원 현황(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단위: 백만원)

사업	내용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결산	2026 예산
중소기업기술탈취근절	디지털포렌식	128	100	100	100	100
기술보호선도기업육성 및 피해회복지원	손해액산정	—	540	540	540	1,250
합 계		128	640	640	640	1,35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안 제30조의 피해회복 지원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는 법무지원단 지원, 손해액 산정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표 2]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관련 피해회복 지원 현황(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단위: 백만원)

사업	내용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결산	2026 예산
중소기업기술탈취근절	법무지원단	622	800	800	800	600
	통합기술보호 지원반	765	953	860	892	889
	조정·중재	609	478	450	454	944
	소계	1,996	2,231	2,110	2,146	2,433
기술보호선도기업육성 및 피해회복지원	손해액산정	—	540	540	540	1,250
	정책보험	—	160	160	160	160
	소계	0	700	700	700	1,410
합 계		1,996	2,931	2,810	2,846	3,843

자료: 중소기업부

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관한 지원 특례(안 제31조)

□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보호 기반조성과 신속한 피해회복과 관련하여 자부담 감면 등 지원기준을 완화하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보조금 등이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이때 혁신형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말함(안 제2조제8호)

- －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 －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 －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의2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 라.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4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다만, 개정안은 지원기준 완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부담 감면에 상응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보조금 등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안 제34조) 및 알선(안 제36조)

□ 현행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분쟁의 조

정·중재 외 알선을 추가하고(안 제34조제2항제1호 및 안 제36조) 위원 수를 5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면(안 제34조제3항)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주요 현황을 보면, 2026년 예산상 사무국 인원은 전문위원 2명을 포함하여 7명이며, 인건비는 5억 4,600만원, 회의 운영비는 3억 9,800만원으로 편성됨. 또한, 위원회의 조정 접수 건수는 2024년 기준으로 34건 수준임
- 한편, 현행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에 사무국과 전문위원을 두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34조제8항부터 제10항³⁾까지는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음

[표 3]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 주요 현황

(단위: 명, 백만원, 건)

사업	2022 결산	2023 결산	2024 결산	2025 결산	2026 예산
위원 수	50	50	50	50	50
사무국 인원*	2	2	5	5	7(예정)
－ 전문위원	—	—	1	1	2(예정)
－ 행정지원	2	2	4	4	5(예정)
예결산	609	478	450	454	944
－ 인건비	127	127	149	159	546
－ 회의 운영비	482	351	301	295	398
주요 실적(조정 접수)	24	33	20	34	—

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대·중소농어업협력재단)에서 위원회 운영 지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인건비 및 회의 운영비 등)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추가된 알선의 업무량과 관련 필요인력 수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 현시점에서 이를 추정하기 어려워 추계에 한계가 있음

3) 안 제34조(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설치)

⑧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4조에 따른 전담기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⑨ 정부는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⑩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윤주철	02-6788-4655	yjc@nabo.go.kr